

EU의 對美 보복관세 부과 배경과 시사점

작성자 : 김홍중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장/부연구위원
박영곤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전문연구원
【hckim@kiep.go.kr, ☎3460-1036】
【ygpark@kiep.go.kr, ☎3460-1159】

主要內容

- 2004년 3월 1일부터 EU는 4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5%포인트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함.
 - EU는 보복관세율을 매월 1%포인트씩 인상하여 2005년 3월에는 최고 17%의 관세를 기존 세율에 추가로 부과할 수 있게 되었음.
 - 2002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는 미 행정부가 자국의 해외판매법인에게 광범위한 세제혜택을 주는 해외판매법인(FSC)/역외소득(ETI) 면세법이 불법 보조금에 해당된다는 판정을 내린 바 있으며, 2003년 5월 EU의 보복조치가 WTO의 규정에 적법하다고 판정한 이후에도 미 의회가 동 조항에 대한 개정을 늦춰 옴에 따라 자동적으로 발동되었음.
- EU의 보복관세 부과에 따라 양자간 교역은 단기적으로 위축될 것임. 그러나 그 효과는 단기적, 국지적일 것으로 예상됨.
 - 양자간 교역관계에서 사상 최초로 이루어진 EU의 對美 보복 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의 대EU 수출은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임. 그러나 EU의 지속적인 대미 무역 흑자, EU의 최대 교역 대상국이 미국이라는 점, 그리고 미국과 EU가 다양한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동 조치로 WTO 체제의 분쟁 해결절차가 또 한번 도전을 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와 기업은 EU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과의 각종 무역분쟁에 대해 분쟁해결기구를 통한 사전 조율과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1. 개요

- 2004년 3월 1일 유럽연합(EU)은 당초 예정대로 미국으로부터의 일부 수입품에 대해 5%포인트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음.
 - 보복관세율은 매월 1%포인트씩 인상되어 2005년 3월 1일에는 최고 17%포인트의 보복관세가 기존 수입관세에 추가로 부과될 것임.
- 동 조치는 미국이 자국의 수출기업에게 주는 세제 혜택이 불법 보조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EU의 보복 조치가 정당하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을 근거로 하고 있음.
 - WTO는 미국 수출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는 세법상 해외판매법인(Foreign Sales Corporation: FSC)/역외소득(Extra-Territorial Income: ETI) 면세 조항이 사실상 불법 수출 보조금에 해당됨을 판정한 바 있음.
 - 이에 WTO 분쟁해결기구는 EU의 보복관세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함.

2. 보복 조치의 경과 과정

- EU와 미국간 수출보조금에 대한 분쟁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여 미국 수출기업이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데서 비롯된 것임.
 - 미국의 수출보조금 지원을 통한 수출진흥책은 1971년 해외판매법인(FSC)법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내국국제판매법인(Domestic International Sales Corporation: DISC)법이 시초였음. 1976년 당시 GATT로부터 DISC법이 불법 수출보조금이라고 판정받게 됨에 따라 미국은 1984년 내국국제판매법인(DISC)법을 해외판매법인(FSC)법으로 개정하였음.

- 해외판매법인(FSC)법 또한 불법적인 수출보조금이라는 본질적인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EU는 해외판매법인(FSC)법의 부당성을 GATT에 제기한 바 있음. 그러나 1990년대 초까지는 우루과이라운드 무역협상의 진행으로 인해 더 이상 문제삼지 않았음.
- 한편, 해외판매법인(FSC)법을 통해 미국의 수출기업들에 대한 보조금이 날로 증대됨에 따라 EU 기업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고 이에 EU는 1997년 미국과 양자간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큰 진전이 없었음¹⁾.

□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1999년 EU는 이 문제를 WTO에 상정하였음.

- EU는 1999년 10월 동 문제 해결을 위한 WTO 패널 설치를 요청하여 패널절차를 밟게 되었음.
- 2000년 2월 WTO 상소기구는 해외판매법인(FSC)법이 불법적인 보조금 성격이 강하다고 판정하고 미국으로 하여금 2000년 10월 1일까지 동법을 철폐할 것을 지시하였음.
- 이에 미국이 해외판매법인(FSC)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법안인 역외소득(ETI)법을 2000년 9월에 제안함에 따라 해외판매법인(FSC)법 철폐 만료기간을 2000년 11월 1일로 연장하게 되었음.
- 그러나 EU는 2000년 11월 40억 달러 상당의 보복조치안을 WTO에 제안하였음. 그 이유는 역외소득(ETI)법이 2000년 11월 15일, 즉 해외판매법인(FSC)법의 철폐만료기간 이후에 법제화되었고, 개정된 역외소득(ETI)법이 조세회피지역에 자회사를 둔 수출기업에 대한 면세 혜택을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임.
- 미국은 EU의 보복조치 요청에 대한 중재를 WTO에 요청하였고 이에 2000년

1) 1997년 12월, 1998년 2월, 1998년 4월 세 차례에 걸쳐 양자간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합의도출이 실패로 돌아갔음.

12월 패널이 구성되어 역외소득(ETI)법의 적법성을 점검하였음. 그 결과 역외 소득(ETI)법에 따르면 해외에 위치하고 있는 미국기업은 수출을 통한 세금감면혜택이 적지만, 미국 내에 위치하고 있는 미국기업은 수출을 통해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금지된 수출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음. 따라서 2002년 1월 WTO는 ETI법을 철폐할 것을 미국에 지시하였음.

- 2003년 5월 WTO는 최종적으로 EU가 제시한 미국에 대한 40억 달러 상당에 준하는 보복관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정하고 이를 허용하였음. 이에 대해 EU는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역외소득(ETI)법을 철폐하는데 필요한 법적절차를 거칠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음.

□ 마침내 미국 의회가 2004년 2월말까지도 역외소득(ETI)법 철폐를 처리하는데 실패함에 따라 EU는 미국에 대해 2003년 5월 계획하였던 40억 달러 상당의 보복관세조치를 당초 밝혀진 일정에 따라 2004년 3월 1일부터 취하게 된 것임.

- 미 의회에서도 수출보조금 관행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미국 산업계가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최근 유로화의 강세에 따른 미국제품의 수출경쟁력 제고로 보복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당분간 그 영향력은 적을 것이라는 관측도 수출보조금 철폐를 지연시키고 있는 원인중 하나임.

3. 보복 조치의 파급효과

□ EU의 미국에 대한 보복조치의 목적은 보복보다는 관련 규정의 철폐이기 때문에 보복조치는 점진적인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음.²⁾

- 보복관세율은 3월 1일부터 대상품목에 대해 5%포인트 부과에서 시작하여 매

2) 파스칼 라미 EU 집행위원회 무역총국 집행위원은 '보복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며 동 제도의 철폐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강조해 왔음.

월 1%포인트씩 늘어나 2005년 3월 1일에는 최고 17%포인트까지 부과하게 되며, 그 사이 미국이 규정을 개정할 경우에는 보복조치가 즉각 중단되게 됨.

□ 그러나 보복조치로 인한 관세부담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 보복조치에 따른 미국의 추가 관세 부담액은 2004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억 1,500만 달러,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억 6,600만 달러가 될 것으로 EU는 추정하고 있음.³⁾

<표 1> 2004년 월별 보복관세에 따른 추정 관세수입 규모

2004년	추가관세율	금액(천 달러)
3월	5%	16,575
4월	6%	19,890
5월	7%	23,206
6월	8%	26,521
7월	9%	29,836
8월	10%	33,151
9월	11%	36,466
10월	12%	39,781
11월	13%	43,096
12월	14%	46,411
합계		314,933

자료: European Commission

□ EU의 미국에 대한 보복조치 규모는 비록 크지 않으나 이번 조치로 영향 받는 수출 품목은 광범위함.

- WTO의 보복조치 허용에 따라 EU는 공론과정과 회원국들간의 합의를 통해 보복조치 대상품목(100여개 품목)을 2003년 3월에 선정하여, 2003년 5월 WTO로부터 승인 받았음.

3) 제재액은 1999~2001년 동안 미국으로부터의 연평균 수입액에 대한 관세총액을 근거로 추정된 것임.

- 보복조치의 대상품목은 보복관세조치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고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EU 총 수입에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최대 20%를 상회하지 않는 품목), EU로부터도 미국에 대해 수출이 되는 품목들임.
- 농산물(햄, 유유 파우더, 토마토, 파인애플 등), 의류(과카, 정장, 바지, 잠옷 등), 산업재(포크, 수도구, 드릴도구 등), 전자제품(수관 보일러, 증기엔진, 냉장고 등), 제지품, 그리고 철강(철연합금, 비합금 주괴 등) 등이 보복관세 부과대상 품목임.
- 그러나, FSC/ETI 규정이 특정산업이나 품목을 지정하지 않기 때문에 영향 받는 품목은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

4. 양자간 통상 관계 전망

- 수출보조금 문제 외에도 미국의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와 버드 수정안 등의 보호무역조치들로 인해 양자간 통상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 2002년 3월 미국의 일방적인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EU를 비롯한 일본, 노르웨이, 중국 등은 WTO에 제소하여 WTO로부터 2003년 11월 규정 위반으로 판정을 받았음. 이에 EU는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22억 달러 상당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준비를 갖추었고, 여타 국가들도 이에 상응하는 보복조치를 준비함에 따라 2003년 12월 미국은 철강 세이프가드를 철회한 바 있음.
- 외국기업에 대한 반덤핑관세로부터의 수입을 미국내 경쟁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비용이나 의료 및 연금부문을 지원하도록 하는 버드수정안(Byrd Amendment)도 2003년 6월 WTO로부터 규정위반으로 판정받고 2003년 12월 16일까지 철폐할 것을 요구받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어 EU는 이에 대한 보복조치도 준비 중인 상황임.⁴⁾

□ 그러나 이번 보복조치로 인해 양자간 경제협력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은 낮음.

- EU와 미국은 하루 10억 유로 상당의 교역관계가 이루어질 정도로 교역량이 많으며, 양자간 모두 상호 최대 교역대상국임.
- 2002년 EU의 미국에 대한 수출은 2,406억 유로 상당으로 EU 전체 수출의 24.2%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도 1,755억 유로 상당으로 EU 전체 수입의 17.7%를 차지하고 있음.

<표 2> EU의 對미국 교역관계

(단위: 십억 유로)

	1980	1990	2002
수 출	30 (14.0%)	82 (21.0%)	241 (24.2%)
수 입	51 (18.9%)	89 (20.2%)	176 (17.7%)
무역수지	-21	-7	65

주: ()안은 EU 전체 수출입중 미국의 비중

자료: Eurostat.

- EU와 미국간 교역의 1/4 정도가 상대방 국가에 투자한 기업간 내부거래로 양자간 투자도 교역수준만큼 높음.
- EU의 對美 투자는 1998~2001년 기간동안 연평균 1억6,266만 유로 상단에 달하며, EU 전체의 외국인투자 중 52%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미국의 對 EU 투자도 1998~2001년 기간 동안 연평균 7,204만 유로 상당으로 EU 전체 FDI 유입의 61%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4) 버드수정안에서 EU는 반덤핑관세 추정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이는 추정방식이 국내가격이 수출가격보다 낮은 경우와 같은 마이너스 덤핑마진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철강, 볼베어링, 화학제품과 같은 수출품목에서 EU가 높은 관세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임.

<표 3> EU의 對미국 투자관계

(단위: 백만 유로)

	2000	2001	2002
Inflow	78 (514)	67 (597)	53 (650)
Outflow	182 (697)	142 (844)	45 (889)
투자수지	104	75	-8

주: ()안은 Stock 기준

자료: Eurostat.

- 미국은 EU의 농업정책이나 보건안전정책 등에 대한 대응이 예상된다.
- 이러한 관계를 고려하여 EU는 2003년 5월에 이미 WTO에서 관정난 보복 조치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올해 3월까지 시행을 가능한 연기하여 미 행정부와 의회가 관련 규정을 개정할 시간을 주었음.

5. 평가 및 시사점

- EU의 보복관세의 부과에 따라 양자간 교역은 단기적으로 위축될 것임. 그러나 그 효과는 단기적,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 양자간 교역관계에서 사상 최초로 이루어진 EU의 對美 보복 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의 대EU 수출은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임.
- 그러나, EU가 지속적으로 대미 무역 흑자를 보이고 있으며, EU와 미국은 상호 최대 교역 및 투자 대상국이라는 점, 그리고 그 이외에도 미국과 EU가 다양한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계속 확대되도록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함.
- 일단 미 행정부와 의회는 동 보복조치를 유발한 FSC/ETI법안에 대해 개정할 것이 거의 확실시됨. 다만 올해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를 판

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음.

□ 동 조치로 WTO 체제의 분쟁 해결절차가 또 한번 도전을 받고 있음.

- EU는 이 문제를 WTO 패널로 가져가 일단 승리하였으나, 미국과 일부 EU 회원국들은 이러한 방식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음.
- 앞서서도 언급되었듯이 양자간에는 다양한 통상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자간 협상 창구에서 양자가 논쟁을 벌이는 것이 과연 양자의 이익에 부합되는가에 대한 반성이 일고 있음.
- 또한 WTO 분쟁 해결의 주된 방식이 단순히 보복 조치의 승인이 아니라 회원국들에게서 발생하는 불법 조치에 대한 사전 예방이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분쟁 해결절차의 무력함이 지적되기도 함.

□ 우리 정부와 기업은 EU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과의 각종 무역 분쟁에 대해 분쟁해결기구를 통한 사전 조율과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현재 우리나라는 EU로부터 10개 품목에 대한 반덤핑관세, 7개 철강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그리고 반도체 D램에 대한 상계관세가 부과되고 있거나 부과가 결정되었음.
- 이러한 가운데 각국의 통상관련 산업정책에 대한 보복 조치가 활성화될 경우 현재 중국과 함께 가장 많은 무역제한조치에 피소되어 있는 한국은 통상 분쟁에 대한 면밀히 주의를 기울여 사전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